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 ① 이 지침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(이하 “주차환경개선사업”이라 한다)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과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한다.	제1조(목적 및 적용 범위) ① --- ----- ----- ----- 제9조제8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지원조건) ①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60% 이내를, 지방자치단체가 40%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. 단, 제7조	제4조(지원조건) ① ----- ----- 50% ----- ----- 50% ----- -----

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해당 시장등은 사업공고시 정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	----- ----- -----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선정한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분담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7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--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-- ----- ----- 60% ----- -----
③ 「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」에 의한 지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80%까지 지원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70% ----- -----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5조(우선 지원대상)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	제5조(우선 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

제12조(현장평가) ① ~ ③ (생략)

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·도지사가 요청하면 컨설팅기관 또는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.

⑤ 시·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
제13조(선정위원회) ① ~ ⑦ (생략)

⑧ 시·도지사는 선정위원회 결과를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4조(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최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장평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제13조(선정위원회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제14조(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) ① -----

----- 적격성 검토 위원회-----

② -----

---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③ 시·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.

제19조(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 구성·운영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「주차환경개선사업 자문위원단」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인회 등 상인조직의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주차환경개선사업 설계 및 집행관련 자문
2. 시공방식의 적절성 등 기술 자문
3. 공사규모 및 사업비산출(재료비, 부지매입비, 노무비 등)

③ -----

---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④ -----

----- 기획예산처장관-----

<삭 제>

적정성

4. 기타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
애로사항 자문
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자문
 결과를 중소기업부장관에게
 통보하고, 자문내용을 반영
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0조(사업변경) ①·② (생략)

③ 지방비를 감액하여 국비지원
 비율이 60%를 초과하도록 사업
 변경을 할 수 없다.

④·⑤ (생략)

제21조·제22조 (생략)

제23조 ~ 제27조 (생략)

제28조(사업관리시스템) ① 중소기업
 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
 선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
 여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,
 공고, 사업 신청 및 평가 관리,
 시장등의 지원 정보, 사업비 이
 용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다.

②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
 는 지방자치단체, 위탁관리기
 관, 시장등은 사업관리시스템에

제19조(사업변경) ①·② (현행과
 같음)

③ -----
 ---- 50%-----
 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20조·제21조 (현행 제21조 및
 제22조와 같음)

제22조 ~ 제26조 (현행 제23조부
 터 제27조까지와 같음)

<삭제>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구하
 는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.

제29조(제재 처리 절차) ① ~ ⑤
 (생략)

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
 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
 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
 하여야 하며, 이의신청 후 개최
 한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
 중소기업부장관, 시·도지
 사,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
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⑦ 중소기업부장관 및 소상공
 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최
 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
 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
 1조~제33조의2에 따라 환수, 사
 업참여제한, 수사의뢰, 고소, 고
 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
 야 한다.

제30조(전문위원회) ① ~ ③ (생
 략)

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
 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
 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
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협약
 및 계약해지·해제, 환수, 고소

제27조(제재 처리 절차) ① ~ ⑤
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 ----- 시·도지사
 -----.

⑦ ----- 지방
 중소기업청장-----

 -----.

제28조(전문위원회) ① ~ ③ (현
 행과 같음)

④ -----

 -----.

· 고발 건의 경우에는 소상공인
시장진흥공단에서 후속 처리한
다.

제31조 (생략)

----- 중소벤처
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
기업청장이 -----

--.

제29조 (현행 제31조와 같음)